

학점이월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1991. 3. 1	개정 2013. 5. 7
개정 1998. 3. 1	개정 2019.11. 1
개정 2004. 9. 1	개정 2020. 3.27
개정 2009.10.19	개정 2026.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원생의 학점이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월학점의 범위) 이월학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졸업 학점 중 교과학점의 1/2에 한한다. (개정: 2020.3.27.)

1. 본교 학사과정에서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중 학사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
2.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강, 취득한 학점중 석사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

제3조(이월학점의 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을 본교 대학원 각 과정의 성적으로 이월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 후 첫 학기 수업일수 1/4선 내에 이를 학사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7.)(개정: 2019.11.1.)

제4조(이월학점의 인정절차) ① 학점이월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산을 통해 이월시키고자 하는 해당 교과목을 기입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거쳐 학사팀에 신청한다. (개정: 2013.5.7.)(개정: 2019.11.1.)(개정: 2026.3.1.)

② 제출된 학점이월신청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5.7.)

제5조(이월학점의 성적처리) 학점이월이 승인된 교과목은 본교 각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을 그대로 인정, 표기한다. 단, 각 과정의 전체 평점 계산시에는 제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 이월학점의 범위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